

의안번호	2200793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4. 7. 18.
추계번호	24C1204

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,500만원, 2030년 2,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1,500만원(연평균4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	90	—	—	—	—	90	18
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2조)	25	25	25	25	25	125	25
합 계	115	25	25	25	25	215	4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)	정부는 뮤지컬산업을 보호·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에 기여하는 뮤지컬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자금 및 용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	
3	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, 제작자,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,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(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, 뮤지컬 관련 단체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8조(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공연권 판매 및 해외 공연 등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제공,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9조(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뮤지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행사 또는 축제를 기획·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0조(지역 뮤지컬 산업 등의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연장의 설치·운영, 뮤지컬 배급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기반 창작뮤지컬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뮤지컬 관련 사업자, 종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11조(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9	안 제12조(뮤지컬진흥위원회)	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은 공연예술 및 뮤지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	의무규정
10	안 제13조(뮤지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)	정부는 뮤지컬산업의 진흥·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,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
2	안 제5조(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3	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		
4	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	
5	안 제8조(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)		
6	안 제9조(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)		
7	안 제10조(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)		
8	안 제11조(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)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9	안 제12조(뮤지컬진흥위원회)	○	
10	안 제13조(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
안 제5조(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)	- 공연예술창작산실(20.8억) - 공연예술창작주체(6억원)
안 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	- 창작뮤지컬아카데미(3.9억) - DIMF 뮤지컬 아카데미(3.5억) - 뮤지컬 예비인력 교육·실습(6억) - 뮤지컬 전문프로듀서 글로벌 역량강화(4억)
안 제7조(지식재산권의 보호)	- 국내저작권 보호활동(140.7억원) - 저작권 교육 및 홍보(63억원)
안 제8조(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)	- K-뮤지컬국제마켓(10억) - 창작뮤지컬 로드쇼(8억) - 창작뮤지컬 유통지원(5억)
안 제9조(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)	-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(DIMF)(4억) - 한국뮤지컬어워즈(3.9억)
안 제10조(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)	- 문화예술 전국 창·제작유통지원(42.8억)
안 제11조(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)	- 뮤지컬컴플렉스 조성 기본 연구(1.6억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(안 제13조)은 전담기관의 지정 여부 및 지원 기준·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안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-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2조)

- 뮤지컬진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25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2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뮤지컬진흥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뮤지컬산업 분야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25명으로 가정
 -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⁾
 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 - $25명 \times 4회 \times 250,000원 = 25,000,000원$

[표 4]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2조)	25	25	25	25	25	1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1)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2022년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